

개인방사선피폭선량 측정서비스

측정수수료 인하행사

2011년 9월 말까지 서비스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1인당 - 측정 수수료 ₩48,000원
(1년 4회기준, VAT 별도)에
측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측정서비스 의뢰 및 문의

전 화 | 070-4044-8800

팩 스 | 070-4032-1900

온라인신청 | www.kndt.co.kr

친절한 서비스 · 최고의 품질과 관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케이엔디티앤아이(주) TLD 사업부

📄 개인선량계 TLD (Thermo Luminescent Dosimeter) 란?

자연에 존재하는 일부 물질 (LiF, CaSO₄ 나 Li₂B₄O₇ 등)은 방사선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즉시 빛으로 그 에너지가 방출되지 않고 그 물질내에 저장되며, 나중에 가열하였을 때 저장된 에너지가 빛으로 방출됩니다. 이런 과정을 열형광과정 (Thermoluminescence process)이라 하며 열형광 특성을 가진 물질을 열형광물질 (Thermoluminescence material)이라 합니다. 열형광물질을 이용하여 개인방사선 외부피폭선량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기기를 열형광선량계(Thermoluminescent dosimeter: TLD)라 합니다.

📄 당사의 TLD 판독서비스

- 중성자 선장 판독가능
- 말단선량계 측정서비스 가능
- ANSI N13.11(2009)의 성능기준 만족
- Panasonic TLD System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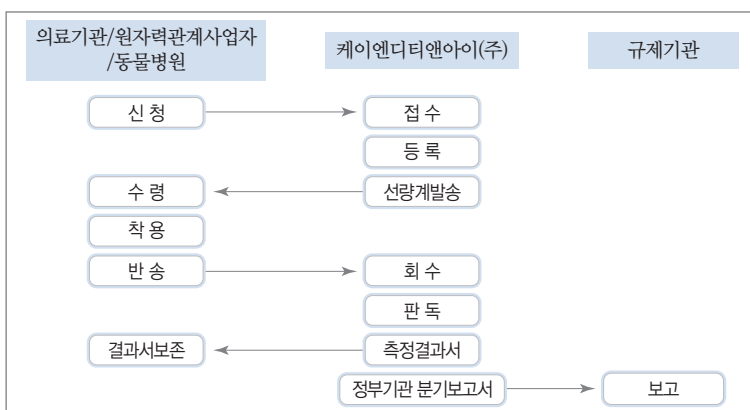
📁 개인선량계 착용의 법적근거

1. 원자력관계사업자 (원자력법시행령 제299조의2 제1항, 원자력법시행규칙 제116조에 의함)는 원자력법 제90조의4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판독업무등록자로부터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방사선피폭선량을 측정하여야 합니다.
2.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함)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고시 제 2010-2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지정 등록된 측정기관으로부터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개인방사선피폭선량을 측정하여야합니다.
3. 동물병원개설자는 (수의사법 제17조의3(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운영)의 제3항)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被曝)관리를 하여야 한다.

👤 착용대상

1.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자 (원자력법시행령 제2조 제15 항에 의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의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 출입자)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2조 3항에 의거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 장소로 하고 있는 방사선관계종사자와 안전관리책임자)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 진단용엑스선장치
 - 진단용엑스선발생기
 -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
 - 전산화단층촬영장치 (특수의료장비로 지정,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 포함)
 - 유방촬영영상장치
4. 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자(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3항에 의거하여 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 장소로 하고 있는 방사선관계종사자와 안전관리책임자)
5. 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 동물진단용엑스선장치
 - 동물진단용엑스선발생기
 -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 포함)
 - 그 밖에 방사선을 발생시켜 동물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

🔄 개인피폭선량측정 절차



✔️ 측정수수료

- 1인 : ₩60,000원 (1년 4회기준, VAT 별도)
- 4인 이상 : 별도문의

